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년의무고용 직종 편중 방지 〉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4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년의무고용 직종 편중 방지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9일 고동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년의무고용 직종 편중 방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청년 의무고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⑥ (생략) <u><신설></u>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기관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배분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 의무고용 제도는 일정 수준의 고용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제도의 양적 성과와 별도로, 현행 제도는 직종 구분 없이 청년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채용이 용이한 직종에 청년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기능 수행과 중장기 인력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관의 기능, 규모 및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청년 의무고용 제도 운영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관의 기능 수행과 청년 고용의 직종 간 균형 있는 배분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이해됨.

다만, 직종별 배분을 의무화할 경우 기관의 인력 수요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청년 채용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사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경력 및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채용 여건이 제한적인 직종의 경우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형식적인 채용이나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종 편중 여부를 판단하

는 과정에서 기관별 해석 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 설계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직종 편중 방지와 기관 운영의 유연성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법제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는 개별 기관의 인력·조직 운영 여건 등이 상이함에도 직종 배분 규정 시 법률의 목적·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이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이 필요한 직종에 청년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직종 배분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